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
도문열, 민병주, 박 석,
박춘선, 신동원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봉준, 이성배, 이종환,
장태용, 허 훈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,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,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- 이 중 서울시에서 설치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소수자 활동을 홍보한 바 있고, 성과평가에서 성과 및 파급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설치 취지가 퇴색되었음.
- 이에, 중복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삭제함 (안 제4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 ①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</u> <u>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· 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</u> <u>3.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 · 운영 지원</u> <u>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</u></p>	<p><u><삭] 제></u></p>

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
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를 삭제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(재정지출) 조·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
 - (재정수입)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4조(성평등 활동 지원센터)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⁾은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 김 증 헌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세입현황

(2023년 9월말 기준 / 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(A)	수입액(B)	징수율	징수부진사유(향후 계획)
			B/A	(징수율 70% 이하 사업)
총 계	685,687	574,971	83.85%	
소 계	685,687	574,971	83.85%	
민간위탁금	593,127	482,411	81.33%	
민간위탁사업비	92,560	92,560	100%	
사업수입	0	0	0%	
이월금	0	0	0%	
법인전입금	0	0	0%	
공모사업	0	0	0%	

자료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(2023. 10.) 발췌